

4. 사고조사 및 보고

- 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 다. 재해발생현장은 현장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라. 안전담당부서는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바. 사고조사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5.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분석하고 재해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6. 기록 및 관리

-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유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2주 1회

나.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절차:

- 1) 협력업체 소장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시스템상에서 실시하며, 위험성 등급이 1~3급인 경우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4~5등급)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는 SORA 검토 회의시 위험성 평가 내용 중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소장이 수정·보완도록 조치한다.
- 2) 안전보건관리자는 협력업체 소장 및 관리감독자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집계하여 위험성 등급수준 1~3등급에 한하여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1~2등급은 중점관리 위험요인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 3) 작업요인분석
공정별 세부작업단위를 선정하고, 각 작업단위별로 객관적인 작업요인을 분석한다.
- 작업요인분석 요건
 - (1) 작업여건 : 고소작업, 밀폐된 공간, 어두운 환경 등
 - (2) 작업순서/방법 : 공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작업순서 파악
 - (3) 투입장비 :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수량, 용량 파악
 - (4) 작업인원 : 직종, 적정인원수, 숙련도, 건강상태 등
 - (5) 타공정연계성 : 같은 공간에서의 연관 작업 등
- 4) 위험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세부작업단위에 대한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 및 재해 형태를 파악한다.
 - (1)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 :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요소
 - (2) 재해형태 : 추락, 전도, 충돌, 협착, 감전, 낙하, 붕괴, 절단, 중독, 화재, 무리한 동작 등 발생되는 피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 5) 위험성 평가 등급기준
파악된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강도를 평가하여 위험성 수준 평가기준(위험등급)을 결정한다.

- 발생 가능성 평가(Probability & Likelihood)

- (1) 발생 가능성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정의 유경험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 가능성 등급을 설정한다.
- (2) 발생 가능성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수, 노출시간, 전기/물/에너지 등의 차단, 기계장치 또는 안전장치의 고장, 노출요인, 보호장구의 작용, 작업자 실수, 위험성의 인식부족, 작업환경조건, 비정상/비상사태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3) 발생 가능성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 등급	발생 가능성 및 빈도 평가기준 (Probability & Likelihood)
1(Frequent)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년 이내 5회 이상
2(Likely)	발생 가능성이 높음 : 1년 이내 1 - 4회
3(Unlikely)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 : 1년 이내 발생 거의 없음

- 발생 강도 평가(Severity)

- (1) 발생 강도 평가는 피해의 영향을 받을 인체부위, 피해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한다.
- (2)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할 경우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보건 관련기관/연구소등에서 제시한 지표를 참고로 한다.
- (3) 발생강도 평가기준

발생강도 등급	발생강도 평가기준 (Severity)
1(High)	사망, 불구, 절단(신체부위), 암, 큰 골절, 산안법 중대재해기준
2(Medium)	보통의 부상 1명, 열상, 화상, 시력장애, 청각장애, 작은 골절
3(Low)	타박상, 순간적 자극, 표면적 상처, 응급처치

- 위험성등급 수준(Risk Level)평가

- (1) 발생 가능성 평가와 발생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 (2) 위험성등급 수준평가 기준(Risk Level in Risk Matrix)

구 분	발생가능성 및 빈도 (Probability & Likelihood)			
	위험등급	1 (F)	2 (L)	3 (U)
발생강도 (Severity)	1 (H)	1등급	2등급	3등급
	2 (M)	2등급	3등급	4등급
	3 (L)	3등급	4등급	5등급

5) 위험성등급 수준에 따른 관리 기준

위험성 등급	위험성 구분	관리 기준	조치 내용
1등급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위험을 줄일 때까지 작업을 금한다.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줄어 들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 금지하거나, 공정을 폐쇄 또는 다른 위험이 낮은 공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2등급	큰 위험	우선적으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 조치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현재 위험이 진행중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하여야 한다
3등급	보통 위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하고, 계획된 일정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위험성수용 현재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 하여야 한다.
4등급	작은 위험	추가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조치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리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가 필요하다.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5등급	허용할 수 있는 위험	별도의 조치/개선계획이 불필요	위험성을 수용함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 위험성 등급수준이 1등급(허용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는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한다.

2. 위험성 감소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예방대책 수립

- 1) 위험성 등급 수준 1~3등급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감소될 수 있는(4~5등급)
구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2) 위험성 등급 수준 4~5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 없으며,
현 작업상태가 유지되도록 확인한다.

나. 교육계획

위험성 등급 수준 1~3등급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수행할 담당지정

다. 예방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위험성 평가에 등록된 위험요인별 예방대책 및 교육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확인
할 점검자 및 점검방법 등을 선정한다.

제 8 장 보 칙

1. 무재해운동

- 가. 무재해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에 의한다.
- 나.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 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 다.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2. 안전·보건제안 제도

- 가. 전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 나. 각 협력업체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상·벌

안전·보건부서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 현장에서 퇴출조치 한다.

가.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협력업체 및 개인
-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 4) 안전에 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는 근로자

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3) 음주상태로 작업을 하는 자
- 4)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시킨 자
- 5)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시킨 자

다.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기준

-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 3) 무재해목표 달성을 실적
-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 5)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기록보존

현장공사를 마감하고 철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식을 갖추어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 가. 재해사고보고서 및 처리에 관한 서류(요양신청서, 휴업급여 등)
- 나.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된 제반서류(노동부, 경찰서 등)
- 다. 안전관련일지 등
- 라. 기타 합의, 소송 및 미결업무에 관한 서류

7. 작업시작시간 등

작업 시작 시간은 07시, 작업 종료 시간은 17시로 정하며, 계절적 특성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사 착공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노사협의체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수렴, 시행한다.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

목 차

1.0 목적

2.0 적용범위

3.0 참고문서

4.0 용어의 정의

5.0 책임 및 권한

6.0 사고보고

7.0 사고조사

동아기술개발(주)

1.0 목적

본 절차서는 동아기술개발㈜ 본사 및 현장에서 안전사고(중대재해 및 부상재해) 발생 시 사고보고 및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사고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유사·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시 적용한다.

3.0 참고문서

- 1) 산업안전보건법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건설기술 진흥법

4.0 용어의 정의

4.1 안전사고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

4.2 아차사고

인적, 물적 손실이 없는 사고

4.3 부상재해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재해 (단, 부상재해 중 사업주 책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하는 부상재해는 제외)

4.4 중대재해

4.4.1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 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③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4.4.2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①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 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 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4.4.3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제외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2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 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원인으로 3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 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5.0 책임 및 권한

5.1 안전담당임원

- 1)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5.2 안전보건팀장(안전담당직원)

- 1) 중대재해 발생 속보 공지
- 2)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지원(초동 조사, 법규 검토, 보상 협의)
- 3)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지원
- 4) 안전사고 발생보고 접수 후 사후대책 지시 및 확인

5.3 현장소장

- 1) 안전사고 발생 즉시 지휘계통으로 사고 발생 보고
- 2) 안전사고 발생시 유사·동종재해 예방 위해 사고조사 실시
- 3) 사건사고 발생 후 관련 공정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 4) 아차사고 발생시 발생원인, 잠재적인 안전보건 결함 등을 파악하여 관련 공정 위험성 평가 시 반영

6.0 사고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7 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시행규칙 제 73 조>

6.1 대내보고

6.1.1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장소장은 중대재해 발생(인지) 시 긴급처리 및 2차 재해방지조치 후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안전담당부서(안전담당자)에 보고한다.

6.1.2 부상재해 발생보고

현장소장은 모든 사고성 부상재해 발생(인지) 시 지체없이(1 시간 이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단, 질병성 재해 및 현장 외부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폭행 등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해 또는 발생사실이 불명확한 경우는 인지 후 익일까지 보고)
사고발생 사실에 대해 익일까지 산업재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 안전담당부서(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한다.

6.1.3 아차사고 발생보고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파악된 아차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한다

6.2 대관보고

6.2.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3 시간 이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 사항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6.2.2 부상재해 발생보고

3 일 이상 휴업 재해(사고 당일을 제외)에 대해서는 1 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2.3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발생보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 67 조>

사망 또는 3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재해 및 1 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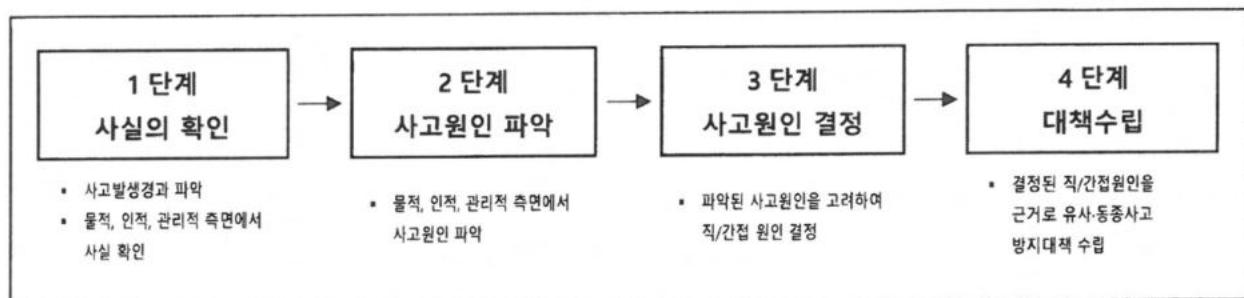
7.0 사고조사

7.1 사고조사 목적

본사 및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아차사고 포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고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의 직/간접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동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2 사고조사 순서

사고의 성격, 복합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고와 관련된 작업책임자(작업반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조사팀(현장)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7.2.1 사실의 확인

1) 사실 확인

사고발생경과 및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확인한다.

- ① 사고발생경과 : 육하원칙 및 시간대 별 상황 변화에 따른 사고 발생 과정 파악
- ② 물적 원인 : 복장·보호구 성능 상태, 기계설비 등의 결함, 부적절한 작업환경, 기상악화 등
- ③ 인적 원인 : 복장·보호구 착용 불량, 기계설비 오용 및 안전장치 제거, 안전수칙 미준수
불안전한 상태 방지(지식, 경험 및 능력 부족, 불안정한 심리 및 신체 상태)
- ④ 관리적 원인 : 관리·감독 사항, 안전교육 실시여부, 보호구 지급여부, 위험성평가의 적절성 등

2) 현장 조사

필요시 사고 발생 장소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록, 측정, 도면, 사진 및 영상 촬영 증거물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 ① 현장 관찰 : 조사자는 현장 전체의 상황, 물건의 존재 및 상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② 사진 촬영 : 사진은 보고서 작성 및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현장 관찰 시에 필히 촬영한다.
- ③ 도면 : 사고관련 건축물, 기계설비 및 재해자의 위치와 사고발생과 연관성 등 현장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3) 사고 관계자 면담

사고발생경과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고관계자(재해자, 목격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장비 및 가해자 등)와 가능한 빨리 면담을 실시하여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의 인적사항, 작업 사항, 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초기 진술을 확보한다

- ① 면담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사고예방)을 설명하여 사고 관계자의 긴장을 해소한다.
- ② 면담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사고관계자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 ③ 사고 관계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 또는 추정 하에 말하는 내용은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한다.
- ④ 사고조사보고서 내의 진술서 양식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사고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진술서 사본을 각 사고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7.2.2 사고원인 파악

1 단계 사실의 확인에서 조사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의 결함 사항을 확인하여, 3 단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정립한다.

물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	인적 원인 (불안전한 행동)	관리적 원인 (안전보건 관리상의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호구·복장 성능 불량 ② 기계설비 자체 결함(안전방호 장치 등) ③ 부적절한 작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간 복잡·협소 - 조명, 환기 불충분 - 위험구간 안전시설 미설치 등 ④ 기타 (기상악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호구·복장 착용 불량 ② 기계설비 오용 및 안전장치 기능 제거 ③ 안전수칙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격자 장비운전 - 안전시설·장치 임의 제거 - 지시 불이행 등 ④ 불안전한 상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전한행동) - 지식, 경험 및 능력 부족 - 불안정한 심리상태 - 불안정한 신체상태 (음주, 질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교육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특별, 정기 등 - 안전조회 및 TBM ② 기술 및 작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작성 및 활용 미흡 - 작업계획 미수립/부적정 - 부적절한 작업인원 배치 - 작업지시 불명확 - 설계/공법 등 기술적 결함 ③ 점검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구간 - 기계기구 및 장비 ④ 안전조직 미흡 ⑤ 기타 (돌관작업, 안전관리비 부족)

7.2.3 사고원인 결정

- 1)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으로 파악된 사고원인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간접 원인을 결정한다. 단,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원인으로 한다.
- 2)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중 검토·결정하고, 간접 원인은 안전보건 관리상의 결함과 불안전한 행동의 선행되는 원인 중에서 검토·결정한다.
- 3) 사고원인의 표현은 그 요점을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것에 근거한 사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7.2.4 재발방지 대책수립

1) 유사·동종사고 방지대책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사고원인을 근거로 대책의 필요성, 구체성, 실시 가능성은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추후 사고 요인의 파악 및 제거, 사고 요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2) 대책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은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

대책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 범위(1~3 등급)에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 수준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4~5 등급)에 있으면 허용 가능한 범위로 낮출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7.3 사고 관계자(재해자, 목격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장비 및 가해자 등)는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제출한다.